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4. 18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4 22..

다. 상 정 일 자 : 제65회 사하구 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98.5.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태경 세무과장)

가. 제안이유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5개년 계획의 지방세 제지원 및 종전감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의 면제범위를 종전 2천cc 이하인 승용차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추가 확대함.
- 2)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의 용도를 현행 보철용 자동차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확대함
- 3) 국가유공자의 1가구 2차량 제외대상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현행 제2조제2항에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만 종전에는 감면하던 것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의 차량에 적용하고,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에 관하여 감면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면허세를 면제 하도록 개정 한편

제2조제3항에 대한 신설된 조항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때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운영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